



# 업무연락

정책보험지급팀

- 담당자 : 차장 황상천
- 전화번호 : 02-3786-7884
- 일자 : 2021. 4. 6

수신 : 수신자 참조

발신 : 정책보험지급팀

## 제목 : 농기계 담보별 경합시 수수료 지침 안내

'21. 3. 1일부터 변경된 농기계 담보별 경합시 수수료와 관련하여 업무 혼선이 있어 기 안내한 수수료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하여 안내해 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### - 아래 -

## 1. 자기신체사고 수수료 기준

구분	대상건	수수료 기준액
가	자기신체사고 I 부상	50만원
나	자기신체사고 I 후유장해 · 사망	66만원
다	자기신체사고 II는	2. 수수료 기준 “나” 항 적용

## 2. 담보별 경합시 수수료 인정기준

NO	구분	수수료
①	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 (부상 8급~14급)	농기계손해수수료만 인정 (자기신체사고 수수료 없음)
②	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 (부상 1급~7급)	농기계손해수수료와 자기신체사고 I 부상 수수료 50만원
③	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 (후유장해 1급~14급, 사망)	농기계수수료와 자기신체사고 I 장해, 사망 수수료 66만원 각각 지급
④	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 (공제금이 있는 사고일 경우) 상해급수무관	농기계수수료와 자기신체사고 I 장해, 사망 수수료 66만원 각각 지급

NO	구분	수수료
⑤	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I (상해급수무관)	농기계손해수수료와 자기신체사고 II 수수료 각각 지급
⑥	농기계손해 + 대인배상	농기계손해수수료와 대인배상 수수료 각각 지급
⑦	대물배상 + 대인배상	대물배상수수료와 대인배상 수수료 각각 지급
⑧	농기계손해 + 대물배상	대물손해액을 농기계손해액에 포함시켜서 농기계손해 수수료만 지급
⑨	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 (부상 1급~14급) + 대인배상	농기계손해수수료와 대인배상수수료만 각각 지급 (자기신체사고 I 수수료 없음)
⑩	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 (후유장해, 사망) + 대인배상	농기계손해수수료와 자기신체사고 I 장해, 사망 수수료 66만원과 대인배상 수수료 각각 지급
⑪	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I + 대인배상	농기계손해수수료와 대인배상수수료만 각각 지급 (자기신체사고 II 수수료 없음)
⑫	①,②,③,④,⑤,⑥,⑨,⑩,⑪와 <u>대물배상이 추가 경합한 사고인 경우</u>	⑧과 같이 대물손해액을 농기계 손해액에 포함시킨 금액의 수수료를 인정한다. ※ ⑦과 농기계손해 추가경합시에도 동일

\* 자기신체사고II는 한도가 1억원이므로 평가 후 1억이 초과하여도 손해액은  
최고 1억원으로 한다.

### 3. 시행일 : '21. 3. 1 이후 사고건부터

수신자 : 고려, 국제, 다스카, 대영, 보람, 서울, 서진, 세계, 세종, 솔로몬,  
아세아, 에스원, 이앤에스, 중앙, 진, 코마, 탑, 태양, 태평양, 티엔지  
프라임, 한국, 해성, 현대하이카, KM, 에스에이에스, 리카온

**정책보험지급팀장(직인생략)**